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윤창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51
----------	-------

발의연월일 : 2021. 11. 5.

발 의 자 : 윤창현 · 강기윤 · 강대식
강민국 · 구자근 · 권명호
권성동 · 권영세 · 김기현
김도읍 · 김미애 · 金炳旭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김성원 · 김승수 · 김영식
김예지 · 김용판 · 김 웅
김은혜 · 김정재 · 김태호
김태흠 · 김형동 · 김희곤
김희국 · 류성걸 · 박대수
박대출 · 박성민 · 박성중
박수영 · 박완수 · 박 진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현 · 서범수 · 서병수
서일준 · 서정숙 · 성일중
송석준 · 송언석 · 신원식
안병길 · 양금희 · 엄태영
유경준 · 유상범 · 유의동
윤두현 · 윤상현 · 윤영석
윤재옥 · 윤주경 · 윤한홍
이달곤 · 이만희 · 이명수

이양수 · 이 영 · 이 용
이종배 · 이종성 · 이주환
이채익 · 이철규 · 이현승
임이자 · 장제원 · 전주혜
정경희 · 정동만 · 정운천
정점식 · 정진석 · 정찬민
정희용 · 조경태 · 조명희
조수진 · 조태용 · 조해진
주호영 · 지성호 · 최승재
최춘식 · 최형두 · 추경호
태영호 · 하영제 · 하태경
한기호 · 한무경 · 허은아
홍문표 · 홍석준 · 홍준표
황보승희 의원(103인)

제안이유

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로 불거지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이 구속되었고, 동시에 민간사업자(화천대유) 실소유주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등 성남시 도시개발사업이 부정·부패·비리의 온상으로 밝혀지며 지방행정 농단으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업자(화천대유)는 자본금 5,000만원으로 577억원을, 투자자(천화동인1호~7호)는 3억을 투자하고 3,463억원 등의 부정한 배당 이익이 발생하였고, 추가로 부정이익이 발생할 예정에 있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여기에 더해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과 민간사업자, 투자자가 사전에 불법과 부정을 도모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동체가 되어 지방행정을 농단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아울러 성남시 위례신도시개발사업, 백현동 개발사업 등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기간 중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손해를 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과 부정으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함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행정농단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형성하거나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부정재산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등 이재명 성남시

장 재직기간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지방행정농단자가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취득한 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행정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조사 및 환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농단과 부정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마.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

바.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1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음(안 제8조).

사.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보존하여 공표하여야 함(안 제14조).

아.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6조).

자.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지방행정농단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함(안 제21조제1항).

차.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

우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23조).

카. 불법·부정재산은 그 취득·증여·상속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환수(還收)하여 국가에 귀속하고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함(안 제28조).

타.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하여 위원회가 환수 또는 추징을 심의·의결한 부정재산에 대한 재산보존의 공조 및 부정재산의 환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30조).

파. 지방행정농단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 34조).

하.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자료 등을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41조 및 제42조).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행정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농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형성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지방행정농단자”란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물질적 또는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공모 또는 방조한 자를 말한다.
3. “부정재산”이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등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기간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지방행정농단자가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취득한 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부정재산에 대한 환수 및 추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4조(지방행정농단과 부정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의 설치) 지방행정농단 및 부정재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부정재산을 환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농단과 부정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진행
3. 지방행정농단자의 재산과 그 형성과정 및 환수대상 결정
4.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발간
5. 조사 및 환수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6. 그 밖에 조사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대학에서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사회복지 관련 분야 또는 교육·역사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교육계·언론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지명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

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1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입은 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입은 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조사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

정한다.

-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 ③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긴급한 회의가 소집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회의일까지 공표한다.

- ④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 ⑤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작성·보존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보고 등)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관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의 채용과 임무 등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징계위원회)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

제21조(조사의 개시 등) ① 위원회는 부정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지방행정농단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정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재산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에 부정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여 부정재산 여부의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조사 결정 때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④ 부정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재산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위원회에 부정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여 부정재산 여부의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자나 대상재산을 선정할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해당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대상자 및 대상 재산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부정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의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2. 부정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관련 국가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4.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방행정농단자의 재산상태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 자

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부정재산 등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시설·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 제130조 제1항,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는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3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2조제1항제2호의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③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 동행명령장은 사무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⑥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사무처 소속 직원의 위임

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⑦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4조(이의신청 및 불복절차) ① 위원회의 실지 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 등에 있어서 부정재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결정 등의 통지) ① 위원회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

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 관계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게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은 자체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부정재산의 환수 및 추징

제28조(부정재산의 환수) ① 부정재산은 그 취득·증여·상속 등 원인 행위 시에 이를 환수(還收)하여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부정재산은 부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부정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 중 부정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환수할 수 있다.

③ 부정재산의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추징) ① 부정재산을 환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지방행정농단자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환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행정농단자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0조(해외 부정재산의 환수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하여 위원회가 환수 또는 추징을 심의·의결한 부정재산에 대한 재산보존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부정재산의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정재산의 환수를 요청하는 경우 환수요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환수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제31조(환수요청서의 송부)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0조

제2항에 따른 환수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계상 환수요청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해외 부정재산의 환수 등) ① 외국으로부터 부정재산 등의 환수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환수받은 부정재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33조(해외 부정재산의 처분) ① 법무부장관은 송부받은 부정재산이 금전 이외의 재산인 때에는 검사로 하여금 이를 환가(換價)하거나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수받은 부정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낮거나 부정재산의 매각에 있어 경제적 효용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거나 매각하더라도 매수인이 없을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부정재산을 폐기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외국에 대하여 부정재산의 매각을 공조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매각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① 지방행정농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및 추징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
2. 이 법에 따른 환수·추징 및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3. 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경비

제5장 보칙

제35조(비밀준수의무) 다음 각 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4.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제36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

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조사보고서의 적성과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외에 국회와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행정농단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 지방행정농단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지방행정농단 관련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4. 지방행정농단 관련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지방행정농단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6장 벌칙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벌칙) 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는 참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2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자

3.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제43조(포상금 지급) ① 법무부장관은 부정재산이 환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환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 위원·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